
행정 · 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 사업 계약특수조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 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2022. 6. 24.

개정 2024. 3. 25.

제1조(목적) 본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 사업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전환(설계)대상기관 및 전환(설계)사업자 간의 효과적인 전환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에 출연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말한다.
3. “전환(설계)대상기관”이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확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환(설계)사업자”란 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자로서, 전환사업자와 상세설계사업자를 의미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
5. “SW공급자 등”이란 전환(설계)사업자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전환(설계)사업자”, “SW공급자 등”,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사업자(MSP)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CSP) 등을 포함한다.
7. “공동수급”이란 본 계약의 사업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별 역할) ①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사업관리 총괄 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환(설계)대상기관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기관에 대한 [별지 제1호] 계약이행동의서 및 [별지 제2호] 담당자 통보서 제출
2. 전환 준비 : 전환(설계)사업자와의 상세 전환 일정 협의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체크리스트 최종 확인(OS, WEB/WAS, DBMS 등 전환사항, 데이터 이관 및 보안 정책 등 정보제공)

3. 전환 지원 : 기존 AP, 인프라의 전환지원, 기술지원, 유지보수 담당자 협력 지원

4. 전환 검사 : 제9조의 검사 등 시스템 정상 동작 확인, 전환 이후 검사 및 최종 점검

5. 예산확보 : 전환완료 이후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③ 주관기관, 전환대상기관 및 MSP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후 전환대상기관의 안정적인 시스템 이용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지원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전환대상기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후 MSP와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수준을 포함한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전환(설계)사업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SW공급자 등은 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환(설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및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환(설계)사업자는 주관기관 및 전환(설계)대상기관과 계약과정에서 합의한 협상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① 주관기관, 전환(설계)대상기관 및 전환(설계)사업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요청을 받은 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는 주관기관 및 전환(설계)대상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기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종료일은 전환지원사업 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단순납품하는 것만으로 계약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대금의 지급) ① 전환(설계)사업자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및 제34조(적용범위)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검사 합격 후 정산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대금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지급된 선금의 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환(설계)대상기관의 분담금이 포함된 지원사업의 경우, 전환(설계)사업자는 대금을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에 안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은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8조(진도보고 및 산출물 관리) ① 전환(설계)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 상황 및 추진내역을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환(설계)사업자는 검사완료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가 수록된 최종산출물 저장매체를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과 전환(설계)사업자는 상호협의를 거쳐 산출물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과 전환(설계)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사업관리상 발생한 산출물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① 전환(설계)사업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전환(설계)대상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기간은 지원사업의 검사기간에 맞추어 동시에 진행한다. 단, 제6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설계)대상기관은 지원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전제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납품된 소프트웨어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전환

(설계)대상기관은 지원사업의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전환(설계)대상기관은 각 전환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전환(설계)대상기관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과업범위에 대하여 통합검사를 수행한다.

⑤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환(설계)사업자의 임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은 제4항의 검사 중 전환(설계)사업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미비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전환(설계)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제6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주관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환(설계)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⑨ 전환(설계)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검사에 대한 이의) ① 전환(설계)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 또는 전환(설계)대상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의 공제, 환수 등) ① 부당이득, 상계 등의 이유로 주관기관이 전환(설계)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경우에는 전환(설계)사업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전환(설계)사업자가 주관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의 환수는 국고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주관기관에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전환(설계)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책임을 전환(설계)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지체와 관련하여 명백히 전환(설계)사업자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설계)사업자 등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지원사업 종료 후, 전환 관련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전환(설계)대상기관에게 무상 귀속된다.

②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전환 관련 결과물 중 공통컴포넌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공통컴포넌트에 관한 지식재산권 일체가 전환(설계)대상기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등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전환(설계)대상기관과 전환(설계)사업자에 대하여 통계, 현황, 성과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전환(설계)사업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통합검사 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주관기관 및 전환(설계)대상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은 전환(설계)대상기관의 하자보수기간과 같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 및 전환(설계)사업자 사이에 계약서의 해석과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분쟁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주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① 전환(설계)사업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입 인력 및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환(설계)사업자는 주관기관, 전환(설계)대상기관 또는 전환(설계)사업자 소속 투입 인력(근로자)이 안전확보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기록하고 주관기관, 전환대상 기관 및 투입인력(근로자)에게 접수 사실과 기록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환(설계)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요청이 근로자의 생명이나 중대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전환(설계)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주관기관, 전환(설계)대상기관은 지체 없이 안전확보 요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 전환(설계)대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확인하면 안전확보 요청자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묻고, 요청자가 그것이 적정하다고 확인하면 전환(설계)사업자에게 작업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위 법령,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시행일)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 된다.

〈 분담금 특약 〉

제1조(분담금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전환(설계)대상기관의 분담금이 있는 경우, 계약 금액 지급에 대한 주관기관과 전환(설계)대상기관의 분담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주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환(상세)대상기관 (전환(상세)대상기관명)
분담금액	선 금			
	잔 금			
	소 계			
장비구입비				
합 계				

제2조(대금의 청구) 사업자는 분담금 특약 제1조의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주관기관과 전환 (설계)대상기관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담당자 통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통보서	
사 업 명	

☐ 검사 담당자

	정	부
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 검사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검직할 수 없음